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나127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변 론 종결 2015. 11. 11.

판결 선고 2015. 12. 9.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가단5077225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1999. 10. 26. 접수 제41660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1999. 11. 26. 접수 제45994호로 각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각 2004. 12. 31.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 내지 20행의 "결국 ~ 시효로 소멸하였다."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신탁보수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정기급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해당하여 3년간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2004. 12. 31.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2014. 5. 26.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신탁보수채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위 신탁보수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라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신탁계약상 신탁종료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귀속권리자는 '시행자'이므로 이 사건에서 신탁 종료 이후 성립하는 법정신탁은 잔여 신탁재산을 시행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본래 신탁의 연장'의 의미를 가진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위 기간 동기의 신탁보수를 피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신탁계약상 기간만료로 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반환받고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5조 제3항 본문 및첨부된 '수익자의 표시' 부분 참조)1), 이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귀속권리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니(이는 '본래 신탁의 연장'이 아니라 '복귀신탁'으로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의 신탁재산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귀속권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이 종료하면 바로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행위의 내용에 따라 잔여 신탁재산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귀속권리자의 신탁재산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신탁이 종료한 때로부터 이를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101626 판결 참조), 귀속권리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신탁이 종료한 때(2004. 12. 31.)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4. 3. 26.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신탁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성우, 판사 윤원목, 판사 하상제

목 록

1. 서귀포시 B 임야 8,192㎡
2. 서귀포시 C 임야 4,208㎡. 끝.

1) 한편, "...잔여 수익 또는 신탁부동산은 시행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각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6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특약사항 제5조 제1항과의 체계해석상
"부동산개발사업을 통해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부동산개발사업을 통해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분양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위 특약사항 제6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